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

오 병 국 (연구위원)

2022.11.24.



목 차

I. 서론

II.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 현황 및 문제점

III. 주요국의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

IV. 세제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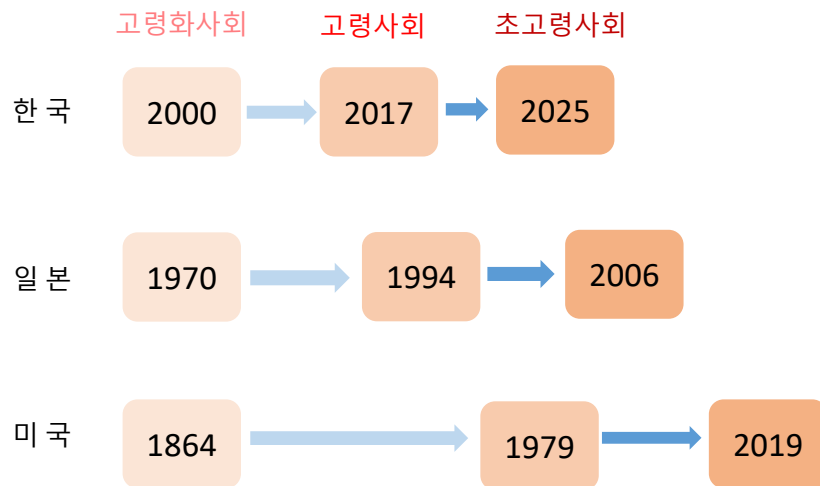


서론

1. 고령화 진행 속도 및 노인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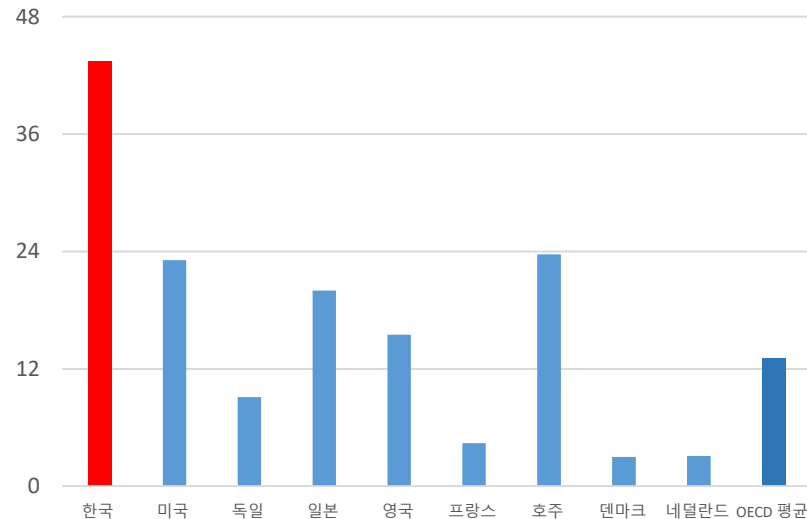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고령화사회 → 2017년 고령사회 → 2025년 초고령사회
- 노후보장체계의 부실로 인해 OECD가입 37개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
- 2018년 노인빈곤율: 43.4% (OECD 평균: 14.3%)

고령화 추이



자료: 통계청

노인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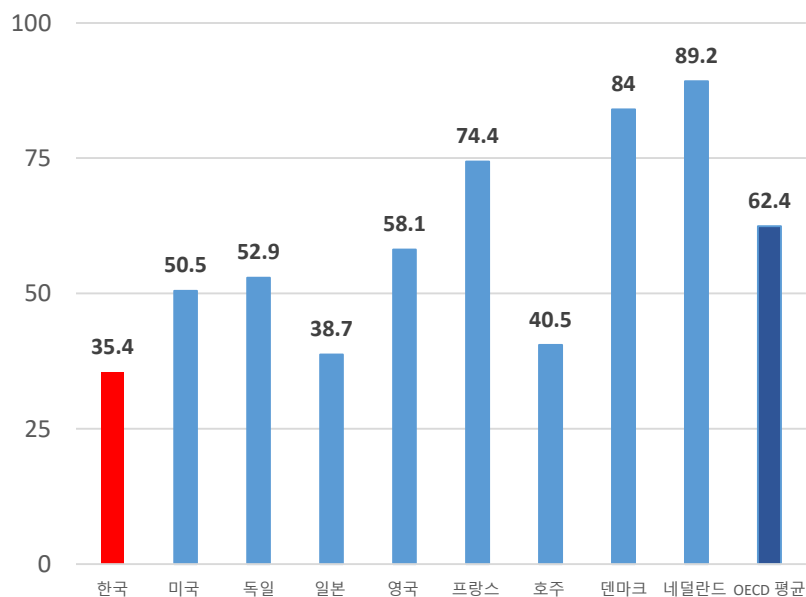
주: 노인빈곤율은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중위 가구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임

자료: OECD(2021), "Pension at a Glance 2021"

2. 연금 소득 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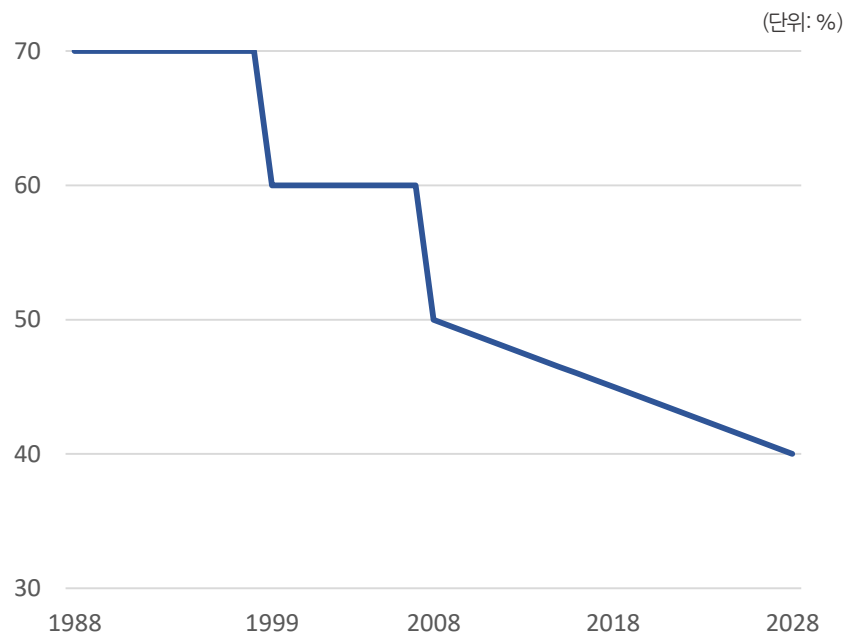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등에서 제안하는 적정 소득대체율 70%에 크게 미흡
 -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
 - 실제 납부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1.3%(2020년)에 불과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주: 남성기준
자료: OECD (2021)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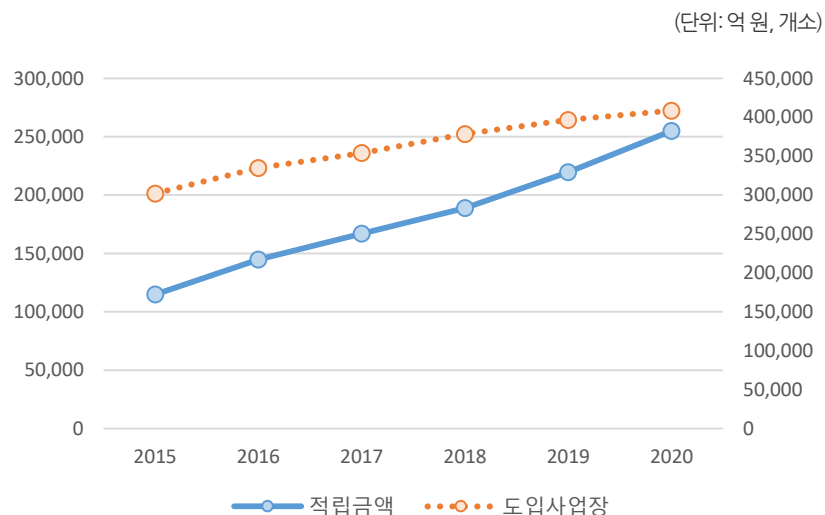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3. 퇴직연금 연금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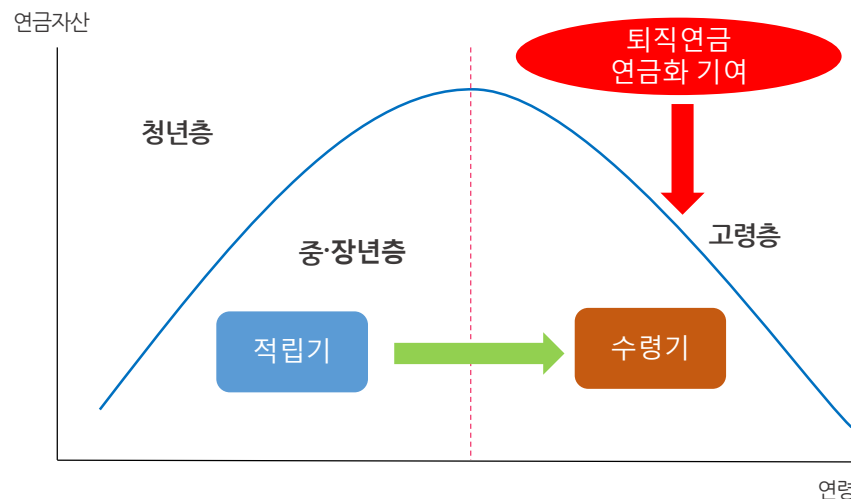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연금화” 하기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
 - 퇴직연금 적립금액 및 도입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
-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은퇴 후 연금자산의 조기소진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을 증대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할 필요

퇴직연금 적립금액 및 도입 사업장 수 연도별 추이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2020), “퇴직연금 통계결과”

적립기 및 수령기의 연금자산 흐름



4. 연구 목적

- 우리나라 연금 관련 세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주요국가의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파악
- 세제 개선 방안 제시

우리나라의 연금 세제

- 우리나라 연금 및 퇴직소득 세제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

주요국의 연금 세제

- 주요국의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세제 개선 방안

- 연금수령 유인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제시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 현황

-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 원칙은 2000년 EET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
 - 사적연금 소득은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받은 본인 부담 분’ 및 ‘운용수익’, 그리고 적격 개인연금 급여액을 의미
 - EET 방식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혹은 세액공제, E),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E),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T)하는 방식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의 기본 원칙

구분	납입단계	운용단계	수급단계	과세체계
근로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E)	운용수익 과세 이연 (E)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T)	EET
사용자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퇴직소득*** 과세 (T)	EET

주: 1) E는 Exempt, T는 Tax

2) *연금소득: 근로자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이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3) **기타소득: 근로자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이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

자료: 한국투자증권, IRP 과세체계 사이트; 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2014. 8. 6.); 금감원 퇴직연금종합안내 우리나라과세체계

1.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 현황

· 근로자 본인부담분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사용자 부담 분은 퇴직소득 으로 과세

-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따른 연금 소득 3.3~5.5%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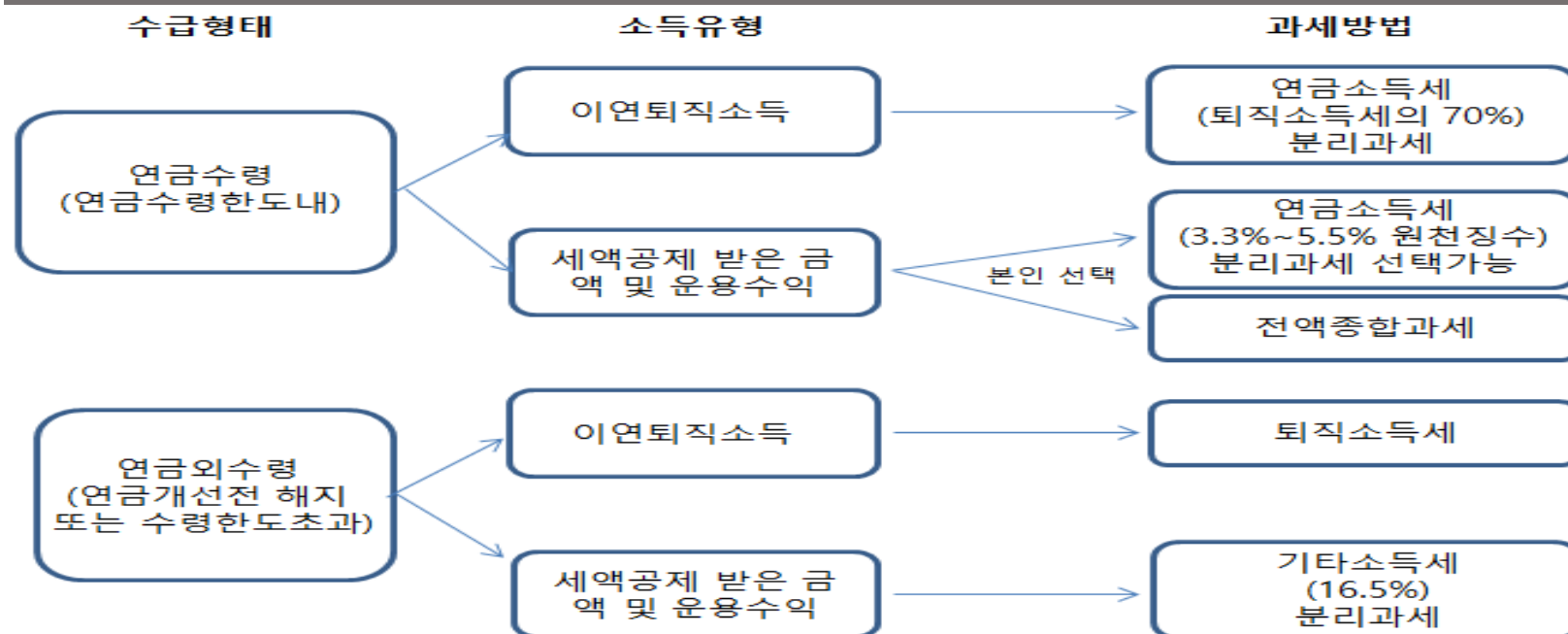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항 5의2호에 의하면, 연령별 연금소득세: 55세~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후 3.3%(지방 소득세 포함된 세율)

* 202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1200만원 초과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15%) 선택이 가능해 졌으며, '23.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됨

- (퇴직소득) 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10년 이하 수급 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이상 수급 시 퇴직 소득의 60% 과세

* 사용자 부담분인 퇴직소득은 연금형태 수령 시 이연 연금 소득으로 적용

사적연금 등의 단계 및 유형별 과세방법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연금 수령 시 과세방법 ; 한국투자증권, IRP 과세체계 ;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2. 문제점

· 현행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연금 수령 유인이 미흡하여 일시금 수령 선택이 여전히 선호

- 퇴직연금 자산 축적 분이 적어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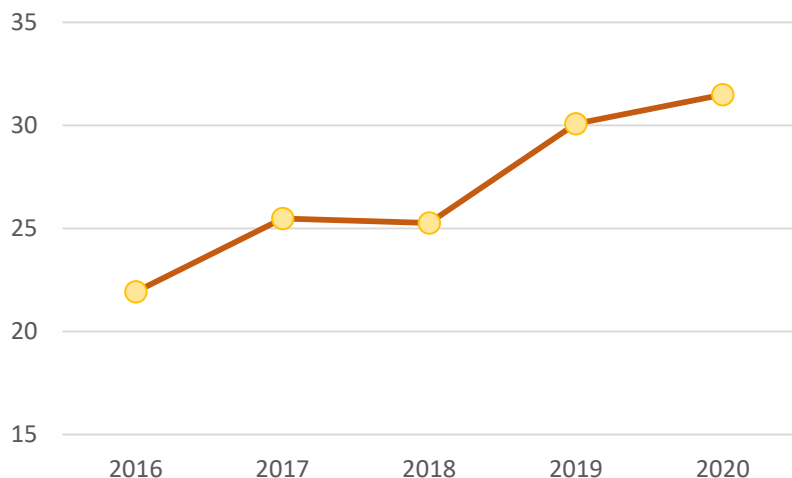
* 일시금 선택시 평균 수령액은 1,615만원으로, 연금수령 계좌 평균 수령액(1억 8,858만원)의 8.6% 수준

-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이 미흡하여 연금 수령 유인이 낮음

* 퇴직소득공제율 50.3%(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 적용) → 실효과세율: 일시금 수령시 4.4% vs 연금 수령시 1.2% 추정 (보험연구원, 2017)

퇴직자 1인당 이연퇴직소득세 차이

(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유형별 퇴직 급여 수령 현황

(단위: 좌, 억 원, %)

구분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	합계
계좌 수 (A)	16,984 (4.3)	380,286 (95.7)	397,270 (100)
금액(B)	32,028 (34.3)	61,398 (65.7)	93,426 (100)
계좌당 금액(A/B)	1.89	0.16	0.24

주: 1) 괄호 안은 비중

2) 55세 이상 수급 대상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4. 17.), “퇴직연금 1년 만에 40조원 증가, 총 적립금 295.6조원”



III

주요국의 연금 수령 유도 관련 세제 현황

1.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 체계

-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일반적으로 EET 방식을 지향
 - 납입단계에서 납입금액에 소득공제(혹은 세액공제),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수급단계에서는 축적된 연금 적립금에 대해 과세하는 EET 방식을 채택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과세체계

구분	국가
E-E-T	한국,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T-E-E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T-E-T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E-T-T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T-T-E	호주, 뉴질랜드, 터키
E-E-E	멕시코, 슬로바키아

자료: OECD(2019), "Financial Incentives for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2. 연금 수령 유도 세제 현황: 중도인출 세제 벌칙 부과

- (미국)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59.5세가 되기 이전에 중도인출 할 경우 가산세 존재
 - * 단, 최초 주택구입, 고등교육비, 고액의료비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벌칙 없이 인출 가능
 - 전통형 IRA 제도의 경우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 한계세율 이외에 10%의 조기인출 가산세를 부여
- (영국) 과거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가 되기 이전에 중도인출 할 경우 한계세율 적용
 - * 단, 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은퇴, 기대여명이 일년 미만 등과 같은 사유 시 벌칙 없이 인출 가능
 - 2015년 4월 이전 DC형 퇴직연금 분할 인출에 대해 최대 55% 세율을 부여
- (호주) 호주의 Concessional 퇴직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중도인출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과세
 - 60세 이전 연금소득 \$205,000을 초과하는 중도인출 금액에 대하여 한계세율 혹은 17% 중 낮은 세율로 과세
- (덴마크) 덴마크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기 이전에 중도인출 할 경우 60% 세율 적용 과세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중도인출 세제

구분	국가
가산세 혹은 고율과세	미국(전통형 IRA), 영국(2015년 4월 이전), 덴마크
한계세율 과세	미국(Roth IRA), 영국(2015년 4월 이후), 캐나다,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호주(concessional: 연금소득 \$205,000 초과시 한계세율 혹은 17% 중 낮은 세율로 과세)
비과세	뉴질랜드, 호주(concessional: 연금소득 \$205,000 이하시 비과세, non-concessional)

참고: 네덜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은 중도인출 비허용

자료: OECD(2015),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HM Revenue & Customs (2016), "Pension Flexibility";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연금세제 개편방향", 보험연구원

3. 연금 수령 유도 세제 현황: 수급 방식별 세제 차등화

- (덴마크) 덴마크는 소득세 최상의 과세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은퇴시점에 일시금 형태의 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삭감
- (호주) 호주는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 세율로 과세하는 적정급여 한도제(Reasonable benefit limit)를 2007년 6월까지 시행
- (스위스) 일시금 수령에 대해 연금 수령 보다 높은 세금 부담

해외 주요국의 퇴직연금 수급 방식별 세제 차등화

국가	내용
덴마크	1999년 이후 소득세 최상의 과세등급을 가진 개인이 일시금 수급만 가능한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 삭감
호주	2007년 6월까지 일정액 이상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 세율로 과세
스위스	일시금 수령에 대해 연금 수령보다 높은 세율 적용

자료: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 "퇴직연금 연금세제 개편방향", 보험연구원; Butler and Ramsden(2022), "How Taxes Impact the Choice Between an Annuity and the Lump Sum at Retirement"

4. 연금 수령 유인 세제의 인과적 효과

- 중도인출 세제 벌칙, 일시금 및 연금 수령 관련 세제 변이(variation)의 효과를 연구

주요국의 연금수령 유도 세제의 인과적 효과

분석 국가	분석 결과
미국	중도인출 세제 벌칙 부과 기준인 59.5세 이후 한달 이내 IRA 인출금액이 59.5세 이전의 인출금액보다 크게 증가
덴마크	소득세 최상위 등급을 가진 자가 일시금 수급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삭감이 납부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
스위스	부(wealth)의 크기에 따른 연금소득세 부담의 변화가 연금 혹은 일시금 수령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자료: Goda, Jones, and Ramnath(2022), "Temporary and permanent effects of withdrawal penalties on retirement savings account"; Chetty et al(2014), "Active vs. Passive Decisions and Crowd-Out in Retirement Savings Accounts: Evidence from Denmark"; Butler and Ramsden(2022), "How Taxes Impact the Choice Between an Annuity and the Lump Sum at Retirement"

5.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은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화” 하기 위해 세제를 활용
 - 중도인출 금액에 대한 세제 벌칙 부과, 일시금 수령에 대한 상대적 조세부담 증대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도 세제



우리나라의
연금 세제
개선 방안

- 중도 인출 금액에 대한 세제 벌칙 부과
- 일시금 수령에 대한 상대적 조세부담 증대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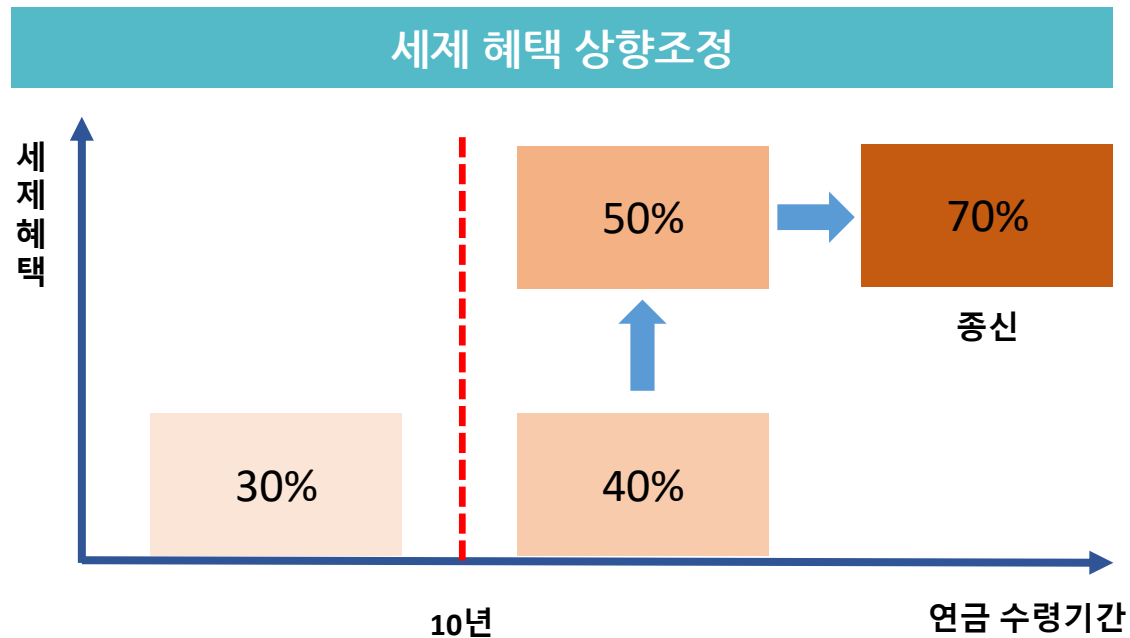
-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
- 연금소득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세제 벌칙 강화



세제 개선 방안

1.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

-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에 일시금 수령 대비 세제혜택 부여
 - 10년 이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 1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40% 감면
- (개선 방안) 10년 초과 연금 수령에 대한 감면율 확대
 - 1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50% 감면 수준으로 조정
 - 종신 연금 수령의 경우 퇴직소득세 70% 이상 감면 수준으로 조정



2. 연금소득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2023년 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
 - 1200만원 이상 분리과세의 경우 15% 세율 vs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의 경우 3.3~5.5% 세율
- 중·저소득층의 연금 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
 - 중·저소득층의 퇴직연금 본인 납부금액이 적어 일시금 수령 선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
 - * 2020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의 1인당 퇴직연금 세액공제금액은 약 23만원 수준
- (개선 방안)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 연금 수령시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
 - 저율 분리과세 한도인 1,200만원을 2,400만원으로 확대
 - 중·저소득층 연금수령 전용계좌 도입 후 보조금 지원 혹은 수령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

연도	세액공제한도	분리과세한도(세율)
2013	400만원	1,200만(3.3~5.5%)
2022	900만원	1,200만원(15%)
2023~		2,400만원(15%)

연금수령 전용계좌 도입 및 세제 지원

중·저소득층
퇴직연금
연금 수령 전용 계좌

보조금
or
비과세

3.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세제 벌칙 강화

-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 부과
 - 세액공제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 부과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부담금,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천재 지변 등
- 이직시 퇴직금을 이관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바로 해지 할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
 - * IRP 이관 금액 대비 해지금액 비중: 약 98%(2020년)
- (개선 방안)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해 세제 불이익 강화
 - 중도인출 시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보다 높은 세율 적용
 - 퇴직금을 이관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바로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수준 상향조정(예: 120% 부과)

세제 벌칙 강화

중도인출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보다
높은 세율 적용

IRP 이관 후
바로 해지

퇴직소득세 수준 상향조정

감사합니다.